

---

#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대사관

## 해외인턴십 결과보고

---

### I. 해외인턴 개요

#### 1. 해외인턴의 목적

- 2012년 2월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는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겸 주 빈 국제기구대표부과 교육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국제학술교류를 목적으로 한 이 MOU체결을 통하여 해당 개개인의 국제적 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의 인턴 근무를 통해 국제연합(UN), 국제원자력기구(IAEA)등 현지 외교관들의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각종 국제 법률적 문제의 처리를 보조하면서 실무경험을 쌓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법학 전공 학생들의 국제적 감각을 배양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 등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인턴기간

곽윤진(지식재산권법) - 2015. 03. 16(월) ~ 07. 31(금), 137박 138일(약 5개월)

날 짜	일 정
3/14(토) (한국 시간)	인천공항 출발 -> 빈 공항
3/14(토) (오스트리아 시간)	빈 공항 도착
3/16(월) (오스트리아 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 주재 한국 대사관 방문
3/16(월) ~ 7/31(금) (오스트리아 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 주재 한국 대사관 인턴십
8/1(토) ~ 8/13(목) (오스트리아 시간)	오스트리아 주변 동유럽 국가 방문
8/14(금) (오스트리아 시간)	빈 공항 -> 인천 공항 출발
8/15(토) (한국 시간)	한국 도착

## II. 오스트리아 개관

### 1. 오스트리아 국가 소개

- 오스트리아 공화국(독일어: Republik Österreich 레푸블리크 외스터라이히), 줄여서 오스트리아(독일어: Österreich 외스터라이히)는 847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중앙 유럽 알프스 산맥에 있는 내륙국이다. 유럽의 중앙에 위치해 여러 나라의 국경이 맞닿아 서쪽으로는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북쪽으로는 독일, 체코, 동쪽으로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남쪽으로는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가 있다. 스위스 쪽은 알프스 산맥과 도나우 강이 흐르고 있다.
- 오스트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1인당 GDP가 높다. 시민을 위해 수준 높은 복지를 하는 나라다. 수도 빈은 수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오스트리아는 1955년 UN 회원국이 되었으며 1995년 EU에 가입 하였고, OECD의 창립국이다. 또한 1995년 쉥겐 조약<sup>1)</sup>을 체결, 1999년 유로화 사용을 시작하였다.
- 현재의 오스트리아의 근원은 합스부르크 왕가 시대로 올라간다. 당시 오스트리아는 신성 로마 제국에 속해 17, 18세기 유럽의 주요 강대국 중 하나였다. 1804년 나폴레옹이 프랑스 황제로 즉위하여 프랑스 제1제국 성립을 선포하자 이에 대항하여 황제 프란츠 2세가 오스트리아 제국을 수립하였다. 현재 오스트리아는 9개의 연방 주로 이루어진 대표민주주의 실현국가이다. 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수도는 빈으로 17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 <그림 1> 오스트리아의 위치

1) 쉥겐협약은 유럽지역 26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서, 쉥겐국가 최종 출국일(단속일)을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쉥겐국 내에서는 무비자로 여행이 가능함. 가입국은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임.



## 2. 오스트리아의 역사

### ○ 선사 및 고대

오스트리아의 역사는 기원전 40,000-35,000년인 선사시대부터 네안데르탈인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BC 8세기 무렵부터는 할슈타트가 문화의 중심이 되어 고대에 켈트인과 라틴인, 슬라브인이 이곳으로 진출하였으며 다양한 인종이 형성되었다.

### ○ 로마제국 시대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같이 프랑크 왕국에 그 뿌리를 둔다. 샤를마뉴 대제에 의해 설립된 행정관구인 오스트마르크(Ostmark)가 오스트리아의 기원이다. 프랑크 왕국에서 동프랑크 왕국 이 분리되었고 후에 게르만 왕국을 거쳐 신성 로마 제국을 형성하며 발전하였다. 한편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는 오스트리아를 근거지로 성장하여 전 유럽에 걸쳐 강대한 세력을 형성하고, 15세기 이후 신성 로마 제국의 제위(帝位)를 독점적으로 세습한다. 이로써 오스트리아의 왕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겸하게 된다.

### ○ 마리아 테레지아(Maria Theresia)시대(1740-1780)

유럽 최대의 왕실 가문으로서 합스부르크 왕가는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와 함께 당대 문화와 정치를 주도한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스페인계와 오스트리아계로 갈라지게 되는데 1700년 초반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가의 대가 끊기면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나고 1740년대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의 대가 끊기면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난다. 오스트리아는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 개입해 이

탈리아 지역의 일부를 얻으나,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서 프로이센에게 슐레지엔을 양도한다. 이를 대가로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리아 테레지아는 여자로서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인정받게 된다(합스부르크로트링겐 왕가). 1804년, 나폴레옹에 대항하여 오스트리아 대공국을 오스트리아 제국으로 승격하여 신성 로마 제국과는 별도의 국가를 수립하였고, 나폴레옹에게 패배함으로써 신성 로마 제국은 1806년 공식적으로 해체된다.

○ 오스트리아 제국(1804-1867)

이탈리아 통일 전쟁에서 사르데냐 왕국에게 패하여 이탈리아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독일 지역의 주도권을 놓고 프로이센과 대립하였으나, 1866년에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독일에서의 영향력을 잃는다. 그 결과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와 프로이센 중심의 소독일주의 중 소독일주의가 채택되어 오스트리아가 제외된 독일 제국이 탄생한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프로이센은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고 프랑스의 중립 약속을 받는 등 오스트리아를 주위 국가들로부터 고립시켜 오스트리아는 극도로 혼란해진 상태였다.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1867-1918)

여기에 나폴레옹 이후 자유주의 사상이 확산됨에 따라 오스트리아 제국 내의 다양한 민족의 독립운동이 심해졌고, 다민족 국가 오스트리아 제국은 해체의 위기에 놓였다. 이에 1867년, 오스트리아 정부와 헝가리 귀족들이 대타협을 맺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성립된다.

○ 제1공화국(1918-1938)

제1차 세계 대전의 패망으로 오스트리아 제국의 영토는 세르비아 중심의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이탈리아, 폴란드에게 할양당하고 남은 영토마저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로 나뉘어 유럽의 강대국 오스트리아는 사라지고 오늘날의 약소국 오스트리아가 된다. 1918년 11월 11일을 기하여 제국은 해체되고 공화국이 선포된다.

○ 연합국 점령 및 제2공화국 출범

1918년부터 20년간 유지된 제1 공화국은 돌푸스 등의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1938년에 이르면 나치 독일에 의해 병합당한다. 히틀러의 패망 후인 1945년에 나라를 되찾았으나(제2공화국) 나치독일의 일부로서 패전국이 되었기 때문에 1955년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한 신탁통치를 받는다. 1955년부터 2013년 초 현재까지 중립국이며 1995년부터는 유럽 연합의 회원국으로 있다. AIIB와 OECD의 창립 회원국이기도 하다.

### 3. 오스트리아의 정치 및 법원제도

#### ■ 정부 : 의원내각제에 변형된 대통령제를 가미한 연방정부

- 정치 : 의원내각제 형태의 연방공화국(9개의 자치주로 구성)
- 연방 대통령 :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원수로 내각 운영에 불간섭하나, 국민들의 직선으로 선출되며 전통적인 의원내각제 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화된 권한 향유
  - ※ 제1차 세계대전 후 1920년 처음 제정된 헌법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였으나, 1929년 개정 헌법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로 변경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일부 강화됨(임기는 6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함)
  - ※ 대통령은 (실제 행사하지 않으나) 형식상 총리를 독자적으로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 보유
- 연방 총리 : 연방정부의 수장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연방의 최고 행정업무를 수행
  - 총리는 의회 다수당 대표가 되며, 내각 구성은 내각을 구성한 정당간 협력에 의해 각료직을 배분하여 구성 (내각의 권력 분점 현상 발생)

#### ■ 입법부 : 양원제

- 상·하원의 양원제로, 하원이 실질적 권한 보유
  - 입법권과 국정감사권은 상·하원이 각각 행사하나, 하원이 우월하며, 내각 불신임권과 국정조사권 등은 하원이 보유
    - ※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한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하원에서 재결의시 상원 법률안 통과 거부권 소멸(정지적 거부권(suspensive veto))
- 하원 : 183명으로 구성, 임기 5년, 직접선거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
- 상원 : 62명으로 구성, 임기는 주의회 임기에 따라 상이(5-6년), 각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 각 주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
  - ※ 오버외스터라이히(Oberösterreich, Upper Austria)주 주의회 임기만 6년이며, 여타 연방주 주의회 임기는 모두 5년

#### ■ 사법부 : 연방국가이나 사법권은 연방에 속하고 각 주에는 사법권 불인정

- 헌법상 사법기관으로 일반법원, 행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가 존재

- 대법원은 민·형사사건을 관할하는 일반법원 중 최고법원

- 오스트리아는 사법영역을 크게 ① 민·형사 재판 ② 행정재판 ③ 헌법재판으로 나누고 각각 독립된 법원으로 하여금 관장토록 하고 있는 점이 사법제도의 특색

### Ⅲ.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대사관 개관

#### 1. 대사관 소개

-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대사관은 오스트리아의 수도 Wien 19구(Gregor Mendel Strasse 25)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는 1892년 ‘조·오 수호통상조약’ 체결을 통해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1963년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꾸준히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2012년에는 수교 120주년, 2013년에는 양국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되었다.
- 우리나라는 오스트리아의 중요한 교역국으로서 양국간 경제관계도 긴밀하게 발전해 오고 있다. 양국 정부는 상대국가의 청년들이 상호교류를 통해 상대국에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2012년 9월부터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고 있다.
- 수려한 알프스의 경관, 합스부르크 왕조의 찬란한 유적,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고전 음악을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오스트리아는 역사적, 문화적 요소 이외에도 탄탄한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강국, 수출 강국, 창조와 혁신분야를 선도하는 국가이다. 최근 유럽전체가 경제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도 오스트리아는 EU 국가중 가장 낮은 실업율을 기록하면서 견실한 경제성장을 계속해 왔다. 철강, 자동차 부품, 제약, IT 장비 등 제조업은 숙련된 노동력을 기반으로 가족중심의 중소기업 위주로 발전해왔으며, 총 매출액 중 수출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주빈국제기구대표부도 함께 겸임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955년 국가조약 및 헌법을 통해 중립정책을 외교정책의 기조로 택하였고, 이후 다양한 국제기구들을 유치함으로써 수도 비엔나는 뉴욕, 제네바와 함께 세계 3대 국제기구 소재 도시가 되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비롯하여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 유엔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유엔

외기권사무소(UNOOSA) 등을 포함하고 있는 유엔비엔나사무소(UNOV), 유엔마약 범죄사무소(UNODC),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주요한 국제기구가 소재하고 있어 비엔나는 연간 국제회의가 끊이지 않는다.

- 대사관에서는 오스트리아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할과 더불어 비엔나 소재 국제기구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부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제기구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의 권익 보호와 아울러 우리 여행객들을 위한 영사 서비스 제공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다.

■ 공관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Gregor Mendel Strasse 25, A-1180, Vienna, Austria
- 대사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등)  
대사관 대표전화 : (43-1) 478-1991  
영사 민원실전화 : (43-1) 478-1991 65 또는 (43-1) 478-1991 68  
기업지원 전화: (43-1) 478-1991 10 / 기업지원 담당관 (고영걸 1등서기관)  
FAX : (43-1) 478-1013  
E-mail : mail@koreaemb.at  
홈페이지 : <http://aut.mofa.go.kr>

■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겸 주 빈 국제기구대표부 전경

<그림 2>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현재 모습



## 2. 주요 업무

업 무	개 요	연락처 (내선)
양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오스트리아 우호협력 관계 증진</li> <li>·우리나라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 확보</li> <li>·한-오스트리아 경제 통상 및 투자 관계 증진</li> <li>·우리나라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li> <li>·한-오스트리아 홍보, 언론, 문화, 예술 및 학술 교류와 협력 증진</li> <li>·가입국 슬로베니아 정부, 경제 및 문화 관계</li> </ul>	478-1991(40)
영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외국민 보호 및 권익 증진</li> <li>·여권·한국입국 사증·국적·호적·민원 업무</li> <li>·한-오 워킹홀리데이 안내</li> </ul>	478-1991(65,68)
다자외교 I 팀 (유엔·군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li> <li>·유엔공업개발기구(UNIDO)</li> <li>·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li> </ul>	478-1991(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li> <li>·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li> <li>·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지침(HCOC)</li> <li>·바세나르체제(WA)</li> <li>·석유수출국기구(OPEC)</li> <li>·유럽안보협력기구(OSCE)</li> </ul>	
다자외교Ⅱ팀 (비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원자력기구(IAEA)</li> <li>·원자력공급국그룹(NSG)</li> <li>·유엔 방사능 영향 과학위원회(UNSCEAR)</li> </ul>	478-1991(43)
총무팀	·대사관 운영, 행정 업무	478-1991(77,78)

## IV.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개관

### 1. 설립

-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3년 12월 8일 제8차 유엔 총회에서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 즉,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주관하는 국제기구의 설립을 제안함으로써 본격화됨
- 1956년 10월 23일 제11차 유엔 총회는 IAEA 헌장 작성 실무회의가 준비한 헌장 초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IAEA 헌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캐나다를 포함한 26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1957년 7월 29일 발효
- 제1차 IAEA 총회(General Conference)는 1957년 10월 1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었고, 최초의 이사회(Board of Governors)는 1957년 10월 4일 개최

### 2. 목적 및 기능

#### 가. 목 적(헌장 제2조)

- 원자력의 세계 평화, 보건 및 번영에 대한 기여 촉진과 확대를 모색하여 원자력 기술협력 및 지원 제공
-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시키는 한편, 원자력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기능 또한 수행. IAEA는 원자력 기술 이전 등 국제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의 군사적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체계(Safeguards System)을 운영
- IAEA는 매년 유엔 총회에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며, 특히 국제 평화와 안전유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유엔 안보리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

## 나. 기 능(헌장 제3조)

### 1)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

-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연구, 개발 및 실제적 활용을 장려하고 지원
-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 회원국의 다른 회원국에 대한 서비스 제공 또는 물질, 장비 및 시설의 공급 보장을 목적으로 중개자 역할 수행
-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실제적 활용에 유용한 작업이나 용역 수행
- 개발도상국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실제적 활용에 필요한 물질, 용역, 장비 및 시설 공급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과학 및 기술 정보 교환 촉진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과학자 및 전문가의 교환 및 훈련 장려

### 2) 핵물질 및 시설에 대한 사찰 및 검증

- NPT<sup>2)</sup>(핵비확산조약)에 근거한 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회원국 내에서의 특수핵 분열성물질(우라늄과 플루토늄) 혹은 기타 물질(천연 우라늄과 토륨 등), 장비, 시설에 대한 사찰 및 검증 등 안전조치(safeguards) 활동을 통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보장
- NPT 가입국이 아니더라도 당사국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급된 핵물질과 핵 시설에 대한 사찰 및 검증 조치 실시

2)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NPT), 核擴散禁止條約],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

### 3) 원자력 안전 및 핵안보 증진

-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기준(safety standards) 설정 및 개발
- IAEA 통제나 감독 하에서 공급된 물자, 용역 장비 시설 및 정보뿐만 아니라 IAEA가 수행하고 있는 활동에 안전기준을 적용

## IAEA의 3대 축

### (1) 원자력 기술(nuclear technology)

- 원자력 기술을 회원국들의 요구와 이익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개발
- 이 과정에서 환경 등과의 관계를 감안한 지속가능한 기술 발전을 도모

### (2) 원자력 안전(nuclear safety)

-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원자력 안전 문화(nuclear safety culture) 조성

### (3) 검증 및 안보(verification and security)

- 핵물질이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

### 4) 기타

- 기구의 직무 수행에 유용한 시설, 공장 및 장비가 해당 지역 내에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적당하지 않거나 만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공장 및 장비를 획득하거나 건설

## 3. 구성 및 조직

- IAEA 헌장은 IAEA 설립의 법적 근거로서 본문 23개조와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IAEA의 목적, 기능, 주요기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

### (1) 주요 기관

## 가. 총회(General Conference)

- IAEA 회원국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정기 총회(General Conference)는 통상적으로 매년 9월 하순 비엔나에서 개최되며, 이사회의 요청이나 회원국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 총회(Special Conference)소집 가능. 총회의 주요 기능은 이사국 선출, 새로운 회원국의 승인, 회원국의 특권 및 권리의 정지, 사무총장 임명 승인, 예산승인, 연차 보고서 심의 등을 하며 IAEA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임

## 나. 이사회(Board of Governors)

### 1) 구 성 : 35개 이사국

- 지명이사국(13개국) : 아르헨티나(브라질),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러시아, 남아공, 영국, 미국, 서유럽 1개국(1년 임기)
- 지역이사국(20개국) : 남미(5), 서유럽(4), 동구(3), 아프리카(4), 중동 및 남아시아(2), 동남아 및 태평양(1), 극동(1)
- 윤번이사국(2개국) : 중동남아시아, 동남아태평양, 극동지역 2년 교대로 1개국 + 아프리카, 중동남아시아, 동남아태평양 교대로 1개국

### 2) 회 의 : 매년 5회(3월, 6월, 9월 총회 전후 2번, 12월) 개최

- 총회 후 이사회는 1일 개최

### 3) 기 능 : 총회를 대신하여 IAEA의 실질적인 정책 결정

- 이사회는 IAEA의 실질적인 정책결정기관. 사업 및 예산을 검토하여 총회에 권고하고, 회원국의 가입을 심의하며, 안전조치 관련 협정 및 기구의 안전기준 관련 조치 등을 승인
- 1999년 제43차 총회에서 이사국 구성(헌장 제6조) 관련 개정안이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나, 이를 수락한 회원국 숫자가 발효요건(회원국 2/3비준)에 미치지 못해 10년 이상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참고로 헌장 제6조 개정안이 발

효될 경우, IAEA 이사국은 현행 35개국에서 총 43개국으로 증가하며, 우리나라는 극동그룹의 일원으로서 지명이사국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이사회 산하의 기술지원협력위원회(TACC: Technic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Committee)는 통상 11월 또는 12월에 개최되며, 기술 지원과 협력 활동을 심의하고, 기술 지원 등을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 5월에 개최되는 사업예산위원회(PBC: Programme and Budgetary Committee)는 이사회가 취급하는 행정 및 재정 문제를 이사회의 심의에 앞서 예비 심의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
- 사무국(Secretariat)은 IAEA의 실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사무총장 산하에 6개 부서(기술협력실, 원자력 에너지실, 원자력과학·응용실, 운용관리실, 원자력안전 및 핵보안실, 안전조치실)로 구성. 사무차장(Deputy Director General)이 각 부서를 관장, 2015년 3월 현재 사무국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수는 약 2500여명.

#### 다. 사무국(Secretariat)

##### 1) 사무총장(Director General)

- 임명: 이사회의 지명 및 총회의 승인
- 임기: 4년 (연임 가능)
- 현 사무총장: Yukiya Amano (일본인, 2009.12.1- 2013.11.30)  
(연임, 2013.12.01.-2017.11.30)

##### ■ 역대 사무총장

	성명	임기	국적
제1대	<b>Sterling Cole</b>	1957~1961	미국(상원의원)
제2대	<b>Sigvard Eklund</b>	1961~1981(5회 연임)	스웨덴(과학자)
제3대	<b>Hans Blix</b>	1981~1997(4회 연임)	스웨덴(외교장관)
제4대	<b>Mohamed ElBaradei</b>	1997~2009(3회 연임)	이집트(IAEA 대외관계국장)
제5대	<b>Yukiya Amano</b>	2009.12~현재	일본(IAEA 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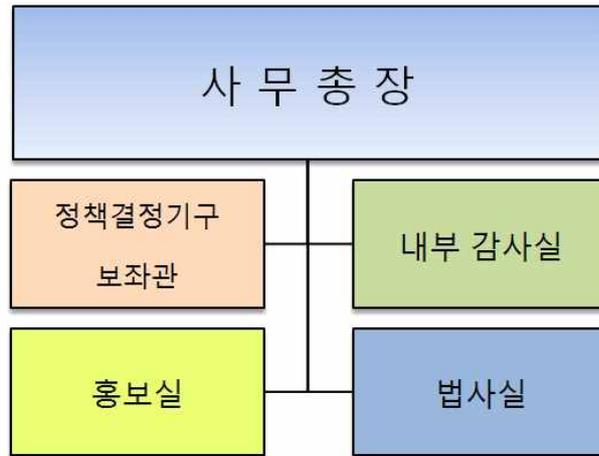
## 라. 자문그룹

- 원자력에너지 상설자문그룹(SAGNE: Standing Advisory Group on Nuclear Energy)
- 안전조치이행 상설자문그룹(SAGSI: Standing Advisory Group on Safeguards Implementation)
- 국제원자력안전 자문그룹(INSAG: International Nuclear Safety Advisory Group)
- 기술지원협력 상설자문그룹(SAGTAC: Standing Advisory Group on Technic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 원자력응용 상설자문그룹(SAGNA: Standing Advisory Group on Nuclear Application)
- 국제방사성폐기물관리 자문위원회(INWAC: Internationa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dvisory Committee)
- 국제원자력 자료위원회(INDC: International Nuclear Data Committee)
- 핵안보자문그룹(NSGC: Nuclear Security Guidance Committee)

(2) 회원국: 164 개국 (2015.03 현재)

■ 가입 절차: 가입 신청 → 이사회의 권고 → 총회의 승인 → 수락서 기탁

(3) 조직



## ① 운용관리실(Department of Management)

### i) 예산재정국(Division of Budget and Finance: MTBF)

예산재정국의 목적은 기관의 모든 프로그램에 관한 지원업무를 담당, 고위 경영진과 이사회, 회원국들의 프로그램 예산, 회계업무 그리고 재정적 자원이용에 대한 보고업무 등을 포함. 또한 기관의 재정적 정보 시스템의 실행 및 관리, 동 부서는 기관의 재정적인 부문에 있어 이사회와 회원국 간 지속적 신뢰를 확보하는 역할

### ii) 일반지원국(Division of General Services: MTGS)

일반지원국은 여행 및 운송 지원업무, 시설 관리, 공문서 및 기록 관리 그리고 VIC 센터 관리 등 IAEA의 전반적인 서비스 기능을 제공

### iii) 회의 및 문서지원국(Division of Conference and Document Services: MTCDD)

회의 및 문서지원국은 사무국과 회원국 간이나 회원국 사이에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여 효과적으로 정보교환 및 보급을 용이하게 함. 이를 위해서 회의 및 문서지원국은 6개의 UN 공식언어로 회의, 컨퍼런스, 교정, 인쇄 그리고 문서 배분 및 과학·기술적 출판 업무를 체계화하고 있음

### iv) 인사국(Division of Human Resources: MTHR)

인사국은 의약·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력 계획, 채용, 직원 개발 그리고 보수 및 복지혜택에 관련된 경력 관리에 이르기 까지 모든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맡고 있음

### v) 정보기술국(Divis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MTIT)

정보기술국은 정보와 기술적인 의사소통 및 서비스를 함에 있어 질이 높고 신뢰성 있으며 지속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 ② 기술협력실(Department of Technical Cooperation)

기술협력사업은 기술 훈련, 전문가 파견, 펠로우쉽(fellowship) 및 과학자 방문을 통한 기술전수 활동과 장비제공 등을 통하여 해당국가 및 지역 내의 직접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함. 국가사업 뿐만 아니라 IAEA가 제안하는 사

업, 지역내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사업 그리고 지역협력협정(RCA, AFRA, ARCAL, ARASIA)에 참여하는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짐.

기술협력자금(TCF)은 회원국들의 분담금, 국가참여비용, 잡수입 등으로 구성. 예산외 기여금은 회원국, 국제기구, NGO 등의 자발적인 기여와 회원국 경비부담으로 구성

### ③ 원자력 에너지실(Department of Nuclear Energy)

#### i) 원자력 발전국(Nuclear Power)

원자력 발전국은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활동을 조정하고 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가동중 원전의 안전성 및 성능향상, 수명연장, 인력양성, 경수로 및 고속로 등에 대한 기술개발, 그리고 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원전을 도입하려는 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을 지원함.

#### ii) 핵연료 주기 및 폐기물기술국(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

핵연료 주기 및 폐기물기술국의 임무는 회원국들이 안전하고, 신뢰성과 경제성이 있으며 핵 비확산성이 있고,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핵주기 기술개발과 폐기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정책 및 전략수립 능력 그리고 기술개발 능력을 증진시킴. 원전과 관련된 핵주기기술개발을 지원하며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활동(원전해체, 방사능 오염지역의 제염 등)과 관련한 폐기물 관리 전략 및 기술개발을 지원함.

#### iii) 계획, 정보 및 지식관리국

### ④ 원자력 안전 및 핵보안실(Department of Nuclear Safety and Security)

#### i) 원자력 시설 안전국(Nuclear Installation Safety)

원자력 시설의 설계부터 건설, 운전 그리고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고도의 안전 수준을 달성하고 유지함. 이를 위해 기술기준을 개발하고 회원국 간의 기술협력, 교육과 훈련 제공, 그리고 국제 공동연구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ii) 방사선 수송 및 폐기물 안전국(Radiation Transport and Waste Safety)

방사선 수송 및 폐기물 안전국의 주요업무는 방사선, 방사성물질의 수송 그리고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며, 작업 종사자의 보건, 치료 절차에 대한 방사선 방호관련 안전기준 및 실행 방법을 개발하고 방사선 및 폐기물 분야의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iii) 원자력 보안국

⑤ 원자력 과학응용실(Department of Nuclear Science and Applications)

i) 보건국(Division of Human Health, NAHU)

보건국은 회원국들이 자국의 공공보건사업에 필요한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기술의 개발, 보급 및 평가를 지원함. 또한 HIV/AIDS<sup>3)</sup>의 검진에 방사성동위원소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WHO/UNAIDS<sup>4)</sup>와도 협력하고 있음.

ii) 물리·화학국(Division of Physical and Chemical Sciences, NAPC)

물리·화학국은 회원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이용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이 기술의 보급을 지원함.

iii) FAO/IAEA 공동 식량 및 농업에서의 원자력기술국(Joint FAO/IAEA Division of Nuclear Techniques in Food and Agriculture, NAFA)

식량·농업국은 FAO 및 IAEA 회원국이 원자력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품질 좋고 안전한 식량과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 각 과는 토양/물관리 및 작물영양과, 식물 육종 및 유전학과, 동물 생산 및 건강과, 곤충학, 식품 오염물질 관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담당함.

iv) IAEA 환경연구소(IAEA Environment Laboratory, NAEL)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방사능 모니터 및 평가, 방사능이 환경과 보건에 미치는 영향, 해양에서의 오염물질 거동 추적을 위한 동위원소기술 등을 회원국에 지원하는 역할을 함.

3)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4) UNAIDS은 각 국가들의 에이즈 관리 및 예방사업을 돕기 위해 1996년 1월 창설된 유엔 산하 에이즈 전담기구이다. 1990년 중반에 이르러 에이즈의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전문적인 유엔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UNAIDS는 HIV와 AIDS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HIV의 확산을 막는 한편, 보건자들의 생활을 보호·지원하고, 개개인과 집단의 HIV에 대한 방어능력을 키우는 등의 임무가 포함되어 있다.

⑥ 안전조치실(Department of Safeguards)

안전조치실의 주요 업무는 핵무기의 확산을 단념시키는 것. 첫 번째로는 국제적 의무를 존중하여 신뢰성 있는 보증을 제공함에 따라 국제적인 신뢰감을 증가시킬 수 있음. 두 번째로는 핵물질 또는 핵관련 기술의 오용을 막아 잠재적인 확산을 경계함.

i) 개념 및 계획국(Concepts and Planning)

안전조치 개념 및 계획국은 핵주기 시설별 안전조치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과 규제조치 등을 개발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안전조치 기획 부서. 또한 안전조치부 내의 정책을 주도하는 Policy Paper 제작. 정기 사찰의 경우에 당사국이 제출해야 할 핵물질의 inventory list 작성방법, 안전조치 면제(Exemption)나, 종료(Termination)에 관한 규정, 그리고 remote monitoring 방법 등이 있음. 또한 방대한 안전조치부의 문서에 대한 quality management system(QMS)을 구축하며, 안전조치부 예산과 인적자원의 조달 및 훈련을 담당

ii) 사찰 운영국(Operations A, B, C)

사찰 운영국은 지역별로 운영 A, B, C국 3개국으로 나뉨. 운영 A국은 한국과 일본, 중국, 호주 그리고 동남아의 태국까지 담당. B국은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시작하여 중동의 나라들과 아프리카, 그리고 남·북 아메리카의 모든 나라를 담당. 운영 C국은 유럽의 모든 나라와 구소련에서 분리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을 담당. 모든 부서는 동일하게 사찰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연간 약 80일 정도 각 나라에 사찰을 다니면서 Interim Inspection과 정기적으로 사찰

iii) 정보관리국(Information Management)

정보관리국은 현재 안전조치 협정의 추가의정서 발효로 인한 핵시설에 대한 위성사진 분석, 환경시료 결과 분석 등 비교적 가장 새로운 분야의 일을 넓혀가고 있으며, 안전조치 부서 내에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을 전산화하는 지원을 담당

iv) 과학기술국(Technical Support)

과학기술국은 안전조치 사찰에 필요한 제반 장비를 개발하고 설치, 지원하는 부서. 또한 이 부서에서는 각 나라에서 안전조치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인 MSSP(Member State Support Program)에 대한 조정과 관리를 담당

4) 연락사무소 2개: 뉴욕, 제네바

- 안전조치 지역사무소 2개: 동경, 토론토
- 연구소 2개: 비엔나 인근 Seibersdorf, 모나코

## 5. 예산

### 가. 정규예산 (Regular Budget)

- 소위 행정비용 충당: 인건비, 회의비용, 사업 준비 및 정보배포에 필요한 비용과 안전조치 적용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주요국 분담율(2014년 정규분담금 기준): 미국(25.0%), 일본(10.43%), 독일(6.87%), 프랑스(5.38%), 영국(4.98%), 중국(4.95%), 이태리(4.28%), 캐나다(2.87%), 스페인(2.86%), 브라질(2.82%), 러시아(2.34%), 호주(1.99%), 우리나라(1.92%), 멕시코(1.77%), 네덜란드(1.59%), 터키(1.27%), 스위스(1.0%)

### 나. 기술지원협력기금 (TCF : Technical Cooperation Fund)

- IAEA의 기술협력사업에 사용되는 예산
- 주로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금 형식으로 충당되나 총회 결의에 따라 준의무분담금 성격
- 목표액에 각 회원국의 분담비율을 곱한 각 국가별 목표액을 정해 놓고 각 회원국이 이 중 얼마를 기여할지를 약속(pledge)

### 다. 비정규 예산 (Extrabudgetary Operations)

- 특정 회원국이나 국제기구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충당
- 정규예산이나 기술지원협력자금의 특정 항목을 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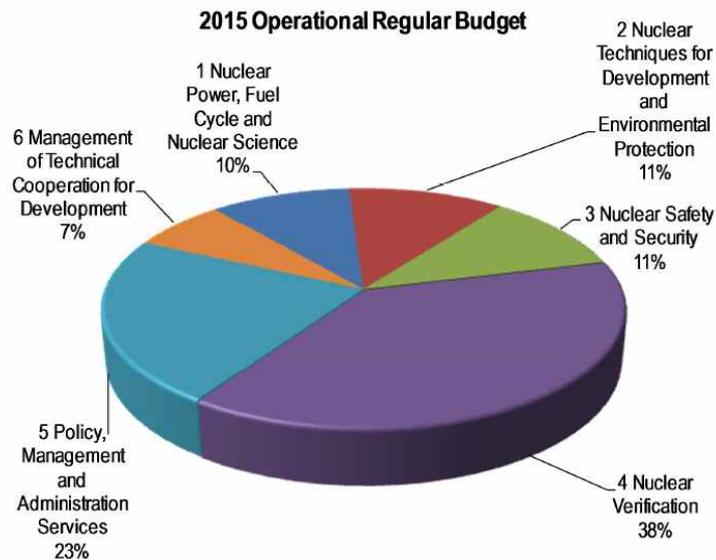
라. 2015년도 예산규모

■ 정규예산: 511,600천 유로

**2015 Total Resources at a Glance**  
(in millions)

Funding Source	2015
Operational Regular Budget	345.3
Capital Regular Budget	8.3
Operational Extrabudgetary	55.9
TC programme	102.1
<b>Total</b>	<b>511.6</b>

■ 분담 비율



■ 기술협력 자발적 기여금 목표: 80,100천달러

## 6. IAEA 주요 활동

### 가. 기술협력 활동

#### 1) 기술개발사업(Nuclear Energy Development and Nuclear Application)

- 원자로 개발, 원전 운영, 핵연료 주기, 방사성폐기물 등에 관련된 기술현황 조사보고서 발간 및 개발방향 제시, 원자력의 경제성 비교 등 수행
- 원자력의 농업, 보건, 산업이용 및 핵융합 등 기초과학 연구개발 활동 지원

#### 2) 기술 협력사업(Technical Cooperation)

- 개도국을 대상으로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기술 이전 및 회원국 간 교류를 증진
- 2015년도 예산은 102백만 유로이며,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조달

### 나. IAEA의 안전조치(Safeguards) 활동

#### 1) 안전조치의 개념 및 배경

- 안전조치(Safeguards)란 일반적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수반되는 핵물질, 장비, 시설 등이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장치의 제조에 전용되지 못하도록 검증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
- IAEA 안전조치는 어느 국가가 원자력 프로그램을 비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지키고 있는지 검증(verify)하기 위한 IAEA의 제반 활동으로서, 중립적 국제기구인 IAEA가 특정 국가의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대해 신뢰성 있는 보증(credible assurance)을 제공하는 기능을 함
  - IAEA 안전조치 체제는 양·다자간 협정, 수출통제체제 및 핵 방호조치 등과 함께 국제 핵 비확산체제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장치
- IAEA 안전조치는 모든 국가에 자동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으며 IAEA와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한하여 적용

- 190개국이 가입한 NPT는 핵 비보유국이 IAEA와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토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IAEA는 각국의 원자력 활동에 대해 군사적 전용 여부를 감시·검증
- IAEA에서는 1년간 안전조치 활동 상황을 정리한 연례 안전조치 이행보고서 (SIR: safeguards implementation report)를 매년 6월 이사회에서 발표. 이와 별개로 IAEA 사무국은 내부적으로 각국별 안전조치 국가평가보고서(SER: state evaluation report)를 작성·관리
- 한편, 비핵지대 조약도 당사국으로 하여금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토록 하고 있는데, 중남미비핵지대조약(1976년 Tlatelolco 조약),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1985년 Rarotonga 조약), 동남아비핵지대조약(1995년 Bangkok 조약), 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1996년 Pelindaba 조약)은 IAEA 전면안전조치협정을, 그리고 중앙아시아비핵지대조약(2006년 Semipalatinsk 조약)은 전면안전조치협정 뿐 아니라 추가의정서도 체결토록 하고 있음

## 2) 안전조치의 법적 근거

- IAEA가 안전조치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우선 IAEA 헌장에 기초함. IAEA 헌장은 안전조치 수행의 기본원칙으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시키고 IAEA가 원조하는 모든 원자력 활동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장하도록 요구. IAEA가 수행해야 하는 안전조치 책임은 헌장 제 3조, 제11조 및 제1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
  - 제3조 A-5항은 IAEA가 관여하는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안전조치 체도를 수립하고 관리하며, 또한 당사국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정에도 안전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IAEA의 권한을 규정
  - 제11조 F-4항은 IAEA가 수행하는 사업을 신청하는 국가들과 IAEA간에 체결하는 협정에 사업 신청국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서 △제공된 지원은 여하한 군사적 목적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하며 △사업은 헌장 제12조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포함시키도록 규정
  - 제12조는 IAEA 사업 또는 기타 협정에 관하여 관계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IAEA는 그 사업 및 협정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원자로를 포함한 모든 전문적 장비와 시설의 설계 검토 △기구가 규정한 보전 및 안전기준의 준수 요구 △운영기록의 작성 및 유지 요구 △경과 보고 요구 및 접수 △조사된 물질(irradiated material)의 화학적 처리수단 승인 △관계 국가의 영토 내에 기구가 지정한 사찰관 파견 등의 안전조치를 수행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고 규정

- 아울러, IAEA 안전조치는 핵비확산조약 및 원자력 관련 양자, 다자협약(비핵지대협약)에도 근거하는데, NPT(제3조)와 비핵지대 협약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IAEA와의 전면안전조치협정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음

### 3) 안전조치협정의 종류

#### [부분안전조치협정 (Item-Specific Safeguards Agreement: INFCIRC/66)]

- 해당국의 원자력 활동 일부에 대해서만 안전조치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NPT 발효(70.3월) 이전에 적용된 안전조치 형태이며, 핵무기 비보유국으로서 원자력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나 NPT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 적용
- 동 협정에 따라 핵물질 뿐만 아니라 비핵물질(중수, 지르코늄 등), 시설, 중수생산시설, 핵관련 장비 등에도 안전조치 적용이 가능하며, 사무국은 핵물질 및 관련 기타 품목이 핵무기 또는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감시
- 현재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3국에 적용중. 참고로 북한도 NPT 가입 이전 시기에 해당하는 1977년에 8MW 연구로에 대해 IAEA와 부분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상금 적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

#### [전면안전조치협정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 INFCIRC/153)]

- NPT 3조에 의거하여 체결되는 안전조치협정으로서, 모든 NPT 핵비보유국은 자국내 모든 핵물질에 대하여 IAEA 안전조치를 받아야 함. 현재 IAEA의 안전조치 활동은 대부분 전면안전조치협정에 따라 실시. 핵 비보유국인 NPT 당사국은 전면안전조치협정의 교섭을 개시한 날(NPT 가입서 기탁일 이전)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동 협정을 발효시켜야 함
- 동 협정은 전문을 비롯하여 본문 1부 및 2부로 구성되며, 1부에는 IAEA와 해당 국가의 권리·의무 등 일반사항을, 2부에는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절차를 규정

#### [자발적 안전조치협정 (Voluntary Offer Safeguards Agreement)]

- NPT는 핵보유국(미, 러, 중, 영, 프)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동 국가들은 IAEA와 자발적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여 지정된 시설에 대해 안전조치를 적용
- 동 협정은 기본적으로 전면안전조치협정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나 국가안보상 중요한 물질 및 시설은 예외로 하는 등 적용 범위에 있어서는 상이함. 또한 해당 물질 및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의 철회도 가능

## [추가협정서 (Additional Protocol: INFCIRC/540)]

- 전통적인 안전조치는 신고된 시설 및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 여부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그런데, 1990년대 초 이라크의 비밀 핵무기프로그램 발견 및 북핵 문제 제기 이후 신고된 핵물질과 시설에 기초하여 안전조치 결론을 내리는 기존 체제의 한계가 노정됨
- 이에 따라, 1993.6월 IAEA 이사회는 안전조치 체도를 강화하기로 결정. 동 결정을 '93+2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는 1993년부터 1995년 NPT 평가·연장회의 전까지 2년간 추진한다는 의미. 그렇지만 동 작업은 계획보다 2년 지연된 1997년 완결
- 1997년 5월 IAEA 특별이사회는 강화된 안전조치 체제(Strengthened Safeguards System) 이행을 위한 추가협정서(Additional Model Protocol) INFCIRC/540을 채택. IAEA 추가협정서는 신고 의무 확대, 사찰권능 강화 등의 조치를 담고 있음. 추가협정서를 비준한 국가는 Euratom포함 125개국

## 4) 통합안전조치체제(Integrated Safeguards System)와 국가차원 안전조치 접근(State-Level Safeguards Approach)

- 통합안전조치란 전면안전조치와 추가협정서 상의 모든 IAEA 검증 수단과 사찰자원을 최적화하여 안전조치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말함
  - 추가협정서를 통해 사찰 범위 및 강도는 강화되었으나 IAEA의 가용 자원은 유한한 상황에서 기존 안전조치의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제가 필요하게 됨
  - 통합안전조치는 IAEA가 미신고 원자력 활동이 없다는 공식적인 결론("포괄적 결론")을 내린 국가를 대상으로 안전조치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가운데 사찰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
- 국가차원 안전조치 접근(State-Level Safeguards Approach)이란 국가를 하나의 단위로 삼아 그 국가의 원자력 활동과 관련된 모든 가용한 정보에 기초하여 안전조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접근법을 말함. 이는 국가가 신고한 핵물질과 시설의 검증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전통적인 안전조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IAEA 사무국이 수년 전부터 추진중

## 5) 우리나라의 안전조치 적용

- 우리나라는 1975년 10월 IAEA와 전면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23개 경수로, 중수로 원자력발전소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40개소의 국내 원자력

관련시설이 IAEA의 사찰을 받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1999년 6월 추가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2004년 2월 비준하였음.

- 우리나라는 2008.6월 IAEA 이사회에서 신고된 핵물질의 미전용과 미신고 핵활동의 부재가 확인된 ‘포괄적 결론’을 승인받았으며 이에 따라 2008.7.1부터 통합안전조치를 시행중

## 6) IAEA 안전조치 체제의 구성 요소

- IAEA 안전조치체제는 △계량(accountancy) △격납 및 감시(containment and surveillance) △사찰(inspection) 등 3가지 요소로 구성
  - 계량: 핵 물질의 위치, 핵 연료 및 사용후 핵연료의 축적량, 핵 물질의 가공 및 재처리 등에 대한 대상국가의 보고 및 확인
  - 격납 및 감시: 물질의 분실 유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봉인(seals), 시설에서 벌어지는 활동을 녹화하는 감시 카메라 등
  - 사찰: 사찰관들에 의한 봉인 확인, 장부 검증, 재고 조사 등의 현장 활동

## 7) IAEA 사찰의 종류

- IAEA 사찰은 핵 물질의 군사적 전용 방지를 위해 핵물질의 위치, 양 및 핵물질의 구성(composition) 등을 파악하고 보고와 기록의 일치 여부 및 기타 자료의 검증을 통해 핵 물질의 이동(flow)을 감시 및 통제하는 활동을 의미
- 사찰의 종류
  - 임시사찰(ad hoc inspection): 당사국이 신고한 최초보고서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을 위해 실시하는 사찰로서 설계 정보 검토 및 확인, 계량점검, 봉인, 감시장비 설치 등을 실시. 또한 변동사항 발생시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사찰도 임시사찰의 범주에 속함
  - 일반사찰(routine inspection): 임시사찰 완료 후 보조약정서를 체결하고, 보조약정서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찰
  - 특별사찰(special inspection): 임시 및 일반사찰 도중에 의심사항 발생시 또는 정보 불충분시 특별히 실시하는 사찰. 1990년대 초 북한 영변 2개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 요구가 그 예임.

## 8) IAEA 안전조치협정 불이행시 조치

- IAEA 안전조치협정 불이행(non-compliance)이 발생하는 경우 IAEA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고, 이사회는 불이행 여부를 결정하는 결의를 채택하

며, 유엔 안보리 및 총회와 모든 IAEA 회원국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IAEA 헌장 제12조 C항, IAEA-유엔간 관계협정 제3조 2항)

- 유엔 안보리에서는 필요시 제재 결의를 하게 되는데, 외교적, 경제적 및 군사적 방법을 통한 제재를 취할 수 있음(유엔 헌장 제7장 39조, 41조, 42조)
- IAEA가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IAEA 회원자격 중지(헌장 제19조), IAEA의 모든 지원 중단 및 IAEA에서 제공·지원된 모든 물질·장비의 반환 요구 등(헌장 제12조)

## 7. 유엔 등 여타 국제기구와의 관계

- ◎ 「유엔-IAEA간 관계에 관한 협정(Agreement Gov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에 따라 매년 유엔 총회에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며, 안전조치 관련 회원국의 불이행 관련 사항은 안보리에 보고
- ◎ 기타 WHO, FAO 등 71개 정부간 및 비정부간 국제기구와 약정을 체결, 협력 수행.



<그림 3> 국제원자력기구(IAEA) 상징도안



Vienna International Center 외부



Vienna International Center 내부

<그림 4> 국제원자력기구(IAEA) 외부 및 내부모습

## V. 국제 컨퍼런스 및 세미나 참석

### 1.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관련 세미나

#### 1) 세미나 개요

- 제 목 : 유럽 내 비핵지대에 관한 개념, 문제점 및 향후 기회에 관한 연구(A Nuclear Weapon-Free Zone in Europe: Concept - Problems - Chances)
- 일 시 : 2015. 4. 23 (목) 13:00 ~ 15:30
- 장 소 : 군축 및 비확산 비엔나 센터(Vienna Center fo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VCDNP)
- 발표자: Harald Müller 박사(Executive Director, Peace Research Institute Frankfurt: PRIF), Mr. Giorgio Franceschini(PRIF 소속 연구원)

#### 2) 목 적

■ 이 연구는 유럽 내 비핵지대(NWFZ)의 실행가능성에 대하여 관심을 촉구시키는 데 의의가 있음. 또한 새로운 비핵 지대의 설립이라 불리우는 NPT(Non-Proliferation Treaty:핵확산방지조약)조약 “2010년 실행계획”을 개발하였음.

■ 헤센주정부 설립 평화 및 갈등연구 재단(Peace Research Institute Frankfurt:PRIF)은 NWFZ에 대한 잠재적인 이점과 단점, 결과, 장애물에 대해 검토 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음.

### 3) 회의 배경

■ Harald Müller 박사는 이러한 비핵화 지대는 실현 가능할 뿐 아니라 “핵 군축에 관한 정체경향”에 맞선 혁신적인 접근과 유럽내 보안에 관한 최근 과제를 포함한 장 점도 함께 연구하였음.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왜 비핵지대를 설립해야 하며, 왜 유럽 이여야 하는가라는 2가지 질문에 관하여 답변하면서 시작하였음.

■ 지역적 비핵지대의 구축은 “안전한 네트워크”의 설립뿐 아니라 NPT 의무를 넘어선 안전 보장성을 제공할 수 있음. 왜 유럽이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몇 가지 근거를 들어 답변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음.

- 유럽은 비핵 지대가 없는 세계의 5지역 중 하나임.
- 유럽내 주요국가들은 핵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반면, 5개 공식적 핵무기 소유국 중 3개 국가는 핵 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
- 유럽내 핵무기국을 포함하여 유럽 내 핵무기에 대해서 잠재되어있는 논쟁이 환기될 수 있음
-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관심을 강조하기 위해 모든 유럽내 국가에게 현실적인 정책을 제공하였음.

### 4) 기대 효과

이러한 과제 때문에 Müller 박사는 장기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현실적 이고 미니멈한 수준으로 접근하라고 조언함. 또한 이러한 노력이 모두 법적으로 정당 함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때로는 이해관계 있는 나라와 정치적 자본을 필요로 할 수 있다고 하였음. 이러한 자본을 이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유럽 내 비핵지 대의 성공적인 창설의 핵심이라고 강조함.



세미나 전경1



세미나 전경2

## 2. 핵 안보 관련 세미나

### 1) 세미나 개요

■ 제 목 : 유럽 내 비핵화 지대에 관한 학문적 견해 또는 현실적인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A Nuclear Weapon-Free Zone in Europe: Academic Digression or Realistic Policy Option?)

■ 일 시 : 2015. 4. 27 (월) 13:00 ~ 15:30

■ 장 소 : 군축 및 비확산 비엔나 센터(Vienna Center fo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VCDNP)

■ 발표자: Deepti Choubey, Fellow, The Foreign Policy Institute(FPI)

### 2) 목 적

■ 핵 안보, 핵 군축과 관련된 국가의 범위를 이해하기 위함(핵 테러리즘 방지)

■ 2015년 핵안보회의와 2016년 정상회담에서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권고하기 위함

### 3) 회의 배경

■ 핵안보와 핵군축간의 연관성을 밝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2004년, UN 안보리 결의 1540에서 채택된 핵안보 조치는 대부분 자발적으로 이행되어졌고, 핵 안보를 관리하는 국제적·법률적 틀은 미완성되어 덧대어진 패치워크에 불과했음. 따라서 모든 사용 및 부문에 있어 핵물질과 연관된 위험을 제대로 강조하지 못함. 이러한 상황속에서 핵안보 정상회담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국가적·세계적 수준의 테러, 범죄, 기타 핵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로 사용가능한 핵물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 되었음.

- 핵 안보와 비교했을 때, “핵 군축”이라는 용어의 정의와 목적은 불분명함.

핵무기를 축소하고 제거하는 과정에서 핵 군축이라는 용어가 언급되는데, 이는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뜻함. 이 용어는 또한 핵 탄두를 만드는 과정에서 언급되는데, 사용 후에 떼어낸 핵 탄두를 분해하고 무기로 사용가능한 핵물질의 분해를 의미함. 완벽한 핵군축이란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 생각한 범위 내에서 핵무기 회사의 시설 또는 기타 인프라까지의 폐쇄와 파괴까지 포함하는 것임.

- 군축체제에는 UN총회위원회, UN군축위원회, NPT 검토 회의와 같은 공식기관이 있으나, 군축 체제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는 의문임.

- 핵안보와 핵군축 사이의 긴장은 엄청나며, 군축 옹호론자들은 2010년과 2012년 정상회담 커뮤니케 이상의 발전을 원함. 또한 몇몇 국가들은 이러한 의도를 암시하고 있음. 작년 헤이그 정상회담에서 브라질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넓은 안보란 핵 안보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의미하는 것임.

#### 4) 기대 효과

##### ■ 핵보유국과 핵비보유국에 대한 권고안

###### ◦ 핵보유국을 위한 행동지침

- 상호간 책임 규범을 설정하고 확장시켜야 하며, 핵안보에서 비확산 및 군축에 관한 최초 보고서를 평가할 것을 요함. 검토회의와 기타 관련 상황속에서 군사적인 권고사항을 받아들이고 증진시켜야 함.
- 핵보유국 사이의 지원 규범, 행동, 실행, 관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탐구하여 그들 사이에서 안정성은 증가시키되 불확실함은 줄일 수 있도록 장려함.

###### ◦ 핵비보유국을 위한 행동지침

- 다른 국가와 공통된 견해를 찾기위해 핵안보를 이용하라. 핵무기뿐 아니라 무기로 사용가능한 핵물질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표현할 필요가 있음.

- 발전의 기회는 아마 핵을 보유한 국가와 공동으로 갖게 될 것임. 군축과 관련된 위험을 이행 및 관리하는 핵안보의 필수적인 역할이 이해될 것임.
- o 정상회담은 민간인 핵물질에 대해서 정의하고 기대치를 높여야 함.
- o 군사적인 용도로써 사용되어선 안됨.
- o 선도국가들(미국, 영국, 프랑스)은 기대치를 높이는 데 일조해야 함.



세미나 전경1



세미나 전경2

### 3. 핵 관련 법률에 관한 워크숍

#### 1) 워크숍 일정

- 제목 : Workshop for Diplomats on Nuclear Law
- 일시 : 2015. 6. 15 (월) 10:00 ~ 16:30
- 장소 : Conference Room M3 of the Vienna International Centre (VIC)

#### 2) 일정

- 개회사  
(W. Tonhauser, Head - Nuclear and Treaty Law Section/Office of Legal Affairs)
- 핵 관련 법률에 관한 개관 (W. Tonhauser)
- 핵 안보에 관한 국제적인 법률적 프레임워크

(C. Drillat, Legal Officer – Nuclear and Treaty Law Section/Office of Legal Affairs)

■ 핵 안전보장 및 비확산에 관한 국제적인 법률 프레임워크

(I. Suseanu, Senior Legal Officer -- Non-Proliferation and Policy Making Section/Office of Legal Affairs)

■ 핵 위협의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적인 법률 프레임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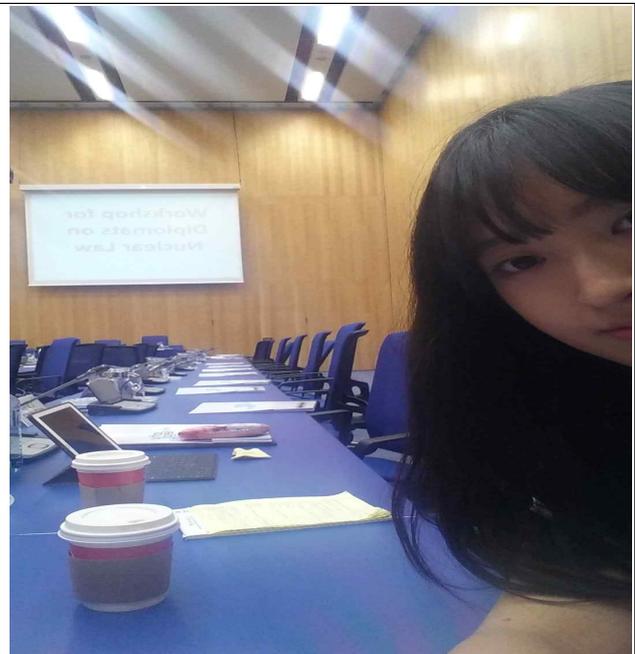
(A. Gioia, Senior Legal Officer -- Nuclear and Treaty Law Section/Office of Legal Affairs)

■ IAEA 측의 법률적 자문

(A. Cherf, Senior Legal Officer -- Nuclear and Treaty Law Section/Office of Legal Affairs)



워크숍 전경1



워크숍 전경2

## VI. 인턴 실습 일지

### 1. 일상 업무

월일	실습내용	실습결과
2015. 3.16 ~ 2015. 7.31	다자 관련 업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부 공한 관리</li> <li>● 대표부 주요 일정 관리</li> <li>● 국제 회의 참석 및 자료 준비</li> <li>● 업무 관계자 인명부 작성 관리</li> </ul>
	양자 관련 업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스트리아 주요 언론 기사 번역 및 보고</li> <li>● 대사관 공식 행사 준비 지원</li> <li>● 레이블 작업, 인명부 작성 등.</li> </ul>
	총무 관련 업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 정리 대장 작성</li> <li>● 각종 행사 준비</li> <li>● 대사관 우편 발송</li> </ul>

### 2. 특별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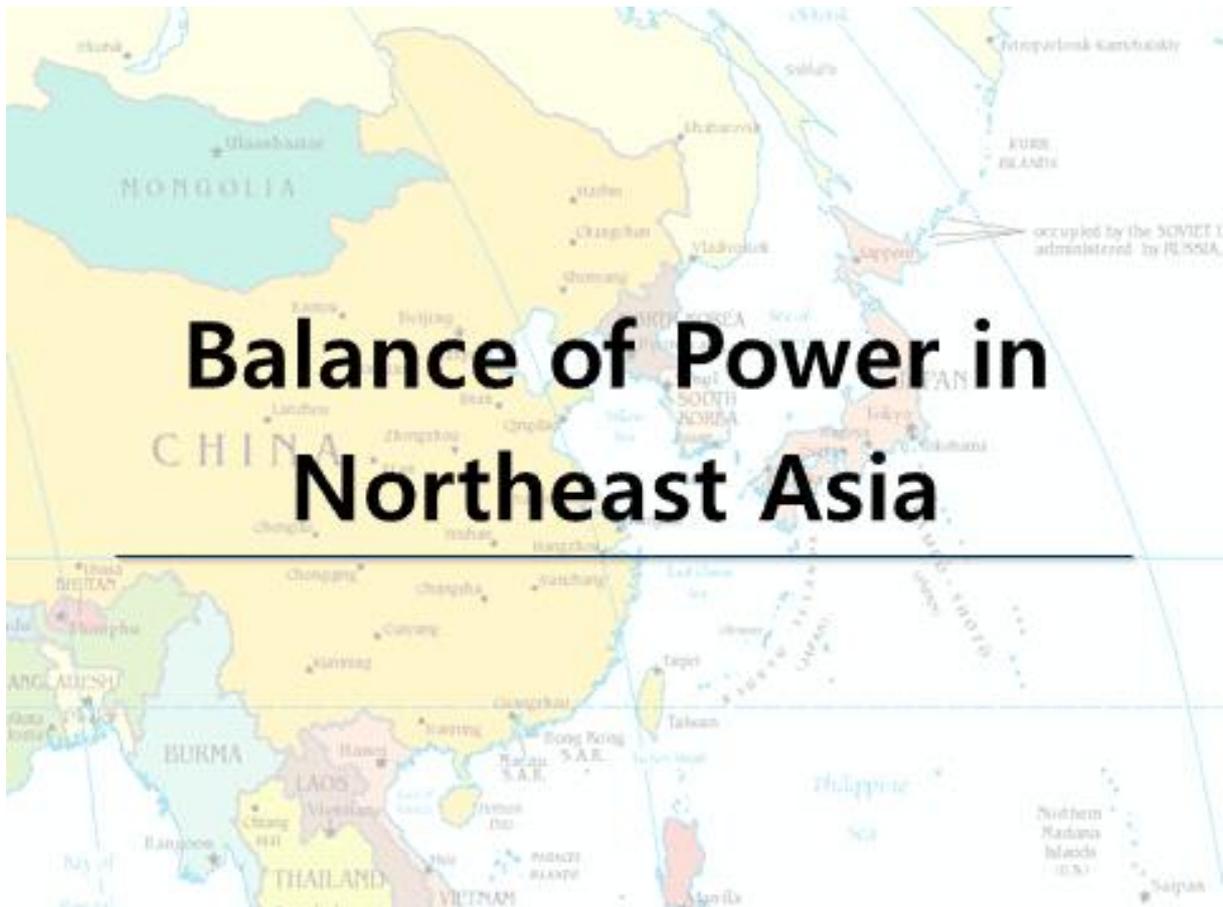
월일	실습내용	실습결과
4.23	A Nuclear Weapon-Free Zone in Europe: Academic Digression or Realistic Policy Option?	NPT관련 세미나에 참석하여 자료 정리
4.27	Toward Disarmament Securely: Clarifying the Nuclear	핵안보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여 자료 정리

	Security and Disarmament Link	
5.4	IAEA 사업예산위원회(PBC) 회의	VIC(Vienna International Centre)에서 개최되는 IAEA 사업예산위원회 회의 참석
5.10	국회의원 방문	국회 방문단 지원 업무
6.15 ~ 6.19	감사원 감사	감사원 감사를 위한 총무과 관련 업무 지원
6.15	Workshop for Diplomats on Nuclear Law	핵 관련 법률에 관한 워크숍 참석 및 자료 정리
6.24 ~ 6.27	한국문화축제	연례 외교 행사로써 한국의 전통공연 관람 및 체험을 통해 한국문화의 아름다움을 오스트리아 지역 사회에 널리 알림. 주재국 인사, 국제기구 직원 및 교민등이 참여함으로써 국가적인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
4.5 ~ 6.30	행정관리 시스템 관리	청사의 행정관리 시스템 관리 (비소모품 대장 전담)

7.27	국회의원 방문	국회 방문단 지원 업무
7.13 ~ 7.30	자료 조사 및 PPT 제작	대사님 국방대학원 강연 자료 준비

■ 자료 조사 및 PPT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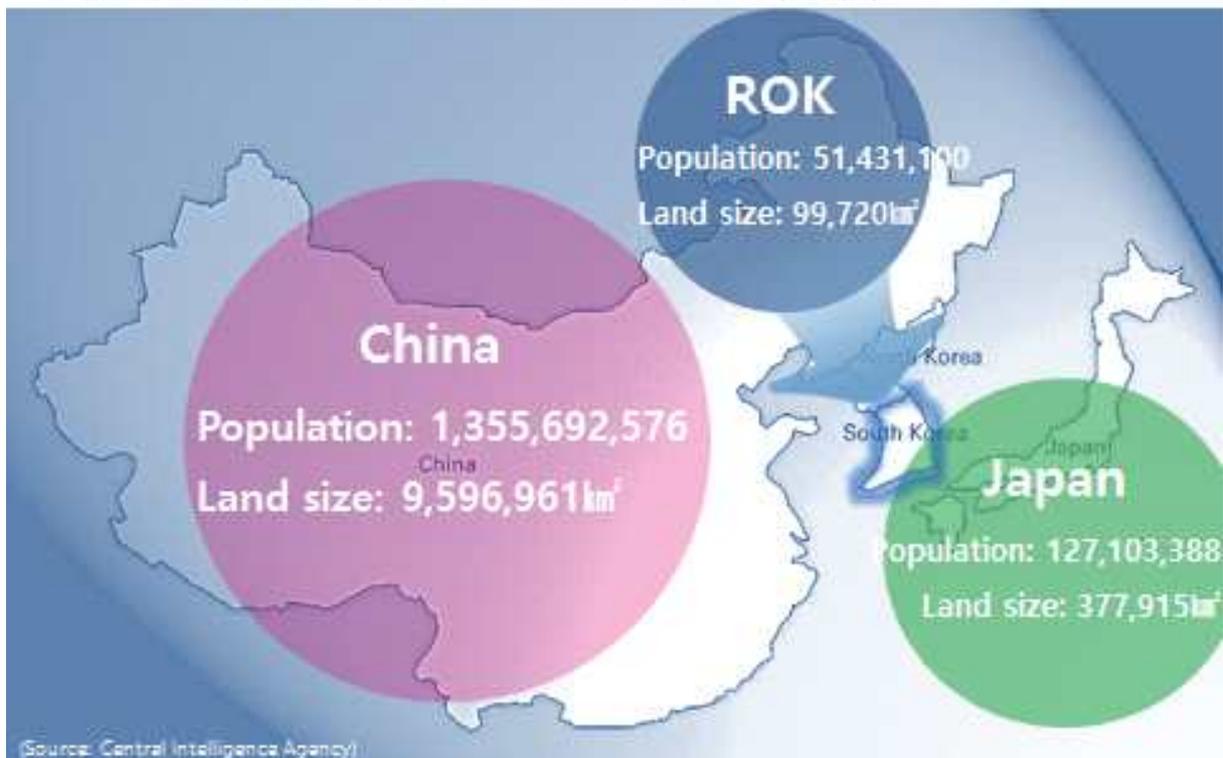
- 동북아시아(한국·중국·일본)의 인구 수 및 국가 면적, 일인당 국민소득(GDP), 무역량, PPP(purchasing power parity)뿐만 아니라 각 정부 예산, 국방 예산의 최근 5년간 추세를 비교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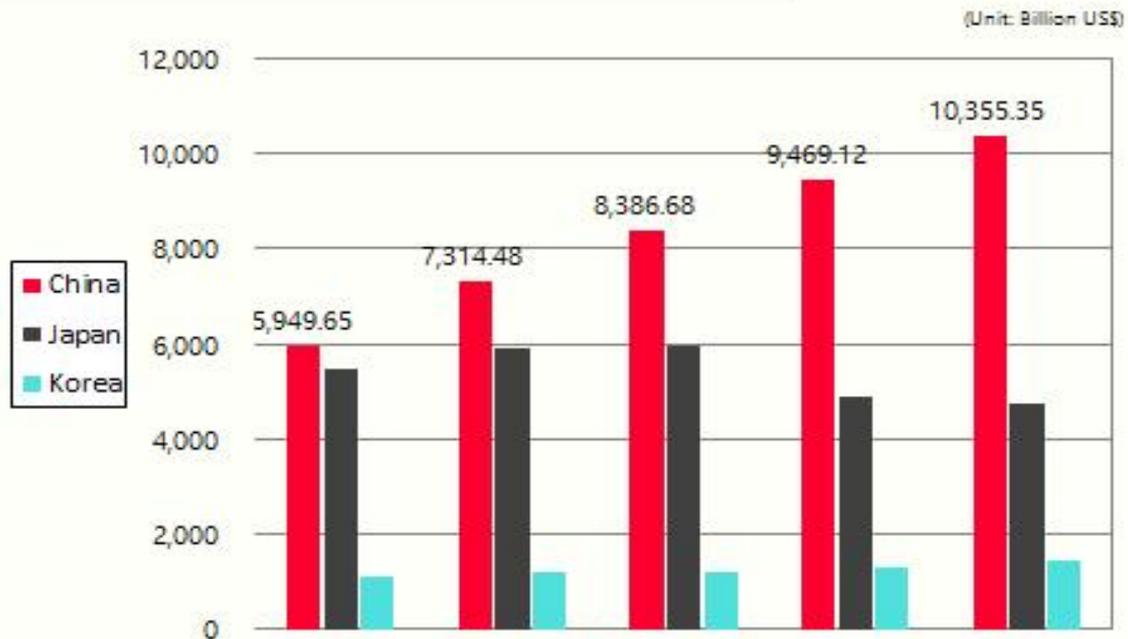
# Outlook

- Population (2014) & Land size (2015)
- GDP : 2010 - 2014
- Trade Volume : 2010- 2014
- GDP per capita & PPP (Purchasing Power Parity): 2010- 2014
- Changing Trend of GDP since 1980
- Changing Trend of Trade Volume since 1988
- Government budget : 2010 - 2014
- Military budget : 2010 - 2014
- Military Power

## Population (2014) & Land size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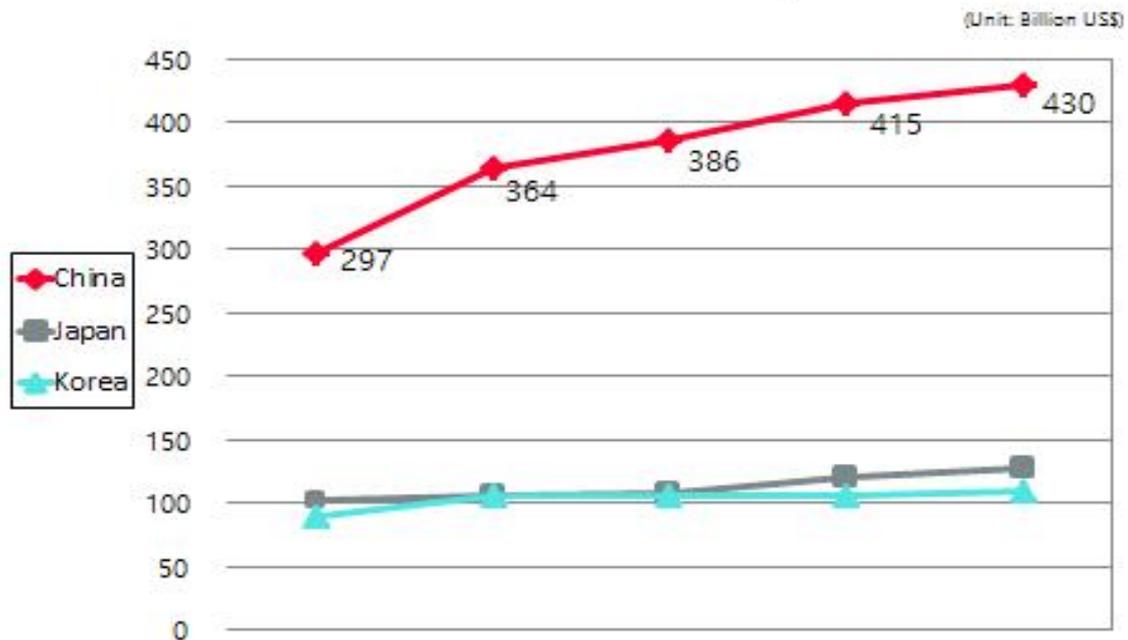


## GDP : 2010 - 2014



(Sourc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Trade Volume : 2010 - 2014



(Sourc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 GDP per capita & PPP (Purchasing Power Parity): 2010-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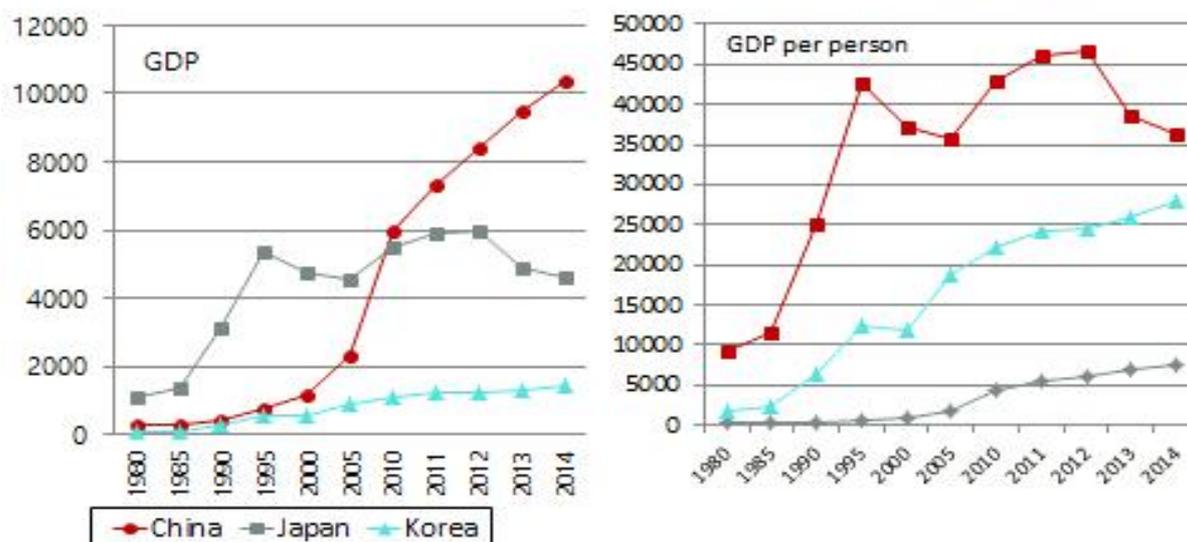
(Unit: Billion US\$)

	China	Japan	Korea
2010	4,437.02 (9,012.873)	42,916.74 (33,713.893)	22,151.37 (29,824.729)
2011	5,428.79 (10,006.368)	46,175.36 (34,294.754)	24,156.04 (31,327.127)
2012	6,193.82 (10,922.511)	46,531.09 (35,602.114)	24,454.19 (32,473.840)
2013	6,958.69 (11,885.819)	38,467.79 (36,793.194)	25,975.07 (33,791.471)
2014	7,572.36 (12,879.853)	37,539.58 (37,389.785)	28,738.73 (35,277.347)

(Sourc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Changing Trend of GDP since 1980

(Unit: Billion US\$)



(Sourc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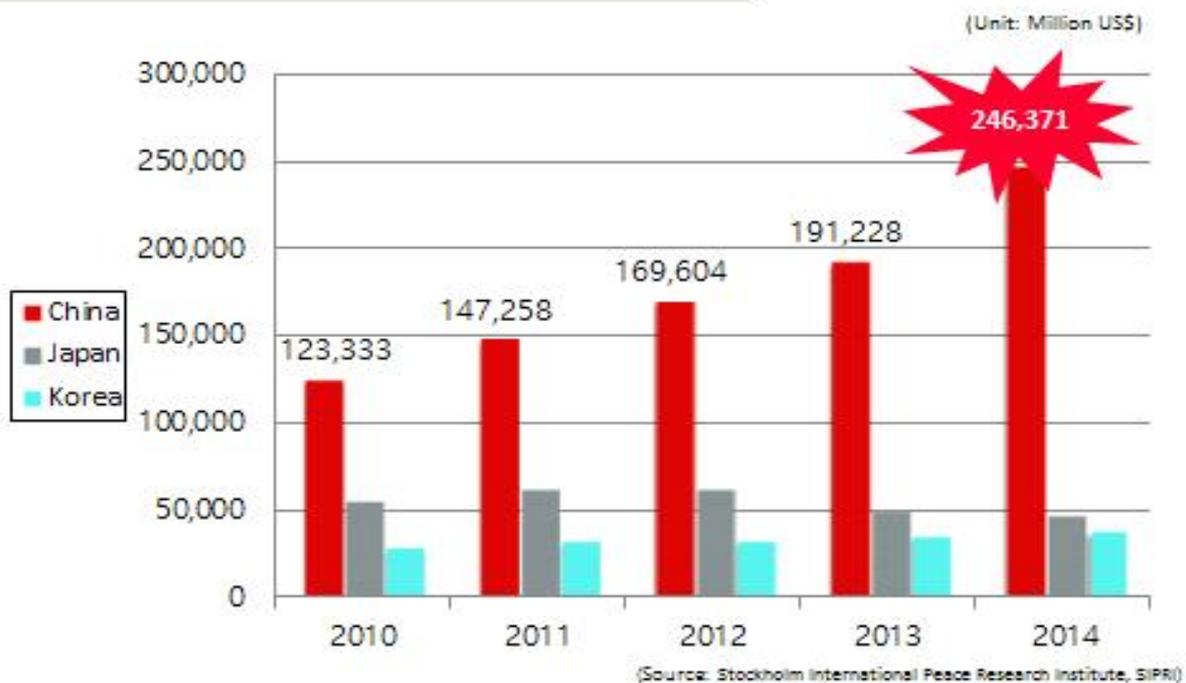
## Changing Trend of Trade Volume since 1988



## Government budget : 2010 - 2014



## Military budget : 2010 - 2014



## Military Power

	China	Japan	Korea
Active Frontline Personnel	2,333,000	247,173	624,465
Tanks	9,150	678	2,381
Armored Fighting Vehicles (AFVs)	4,788	2,850	2,660
Total Aircraft	2,860	1,613	1,412
Fighters/Interceptors	1,066	289	399
Attack Helicopters	196	122	77
Aircraft Carriers	1	2	0
Frigates	47	0	11
Destroyers	25	43	12
Submarines	67	16	13

(Source: CIA.gov, CIA World Factbook, wikipedia.com)

-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중국의 GDP와 무역량, 정부 예산 및 국방 예산의 성장세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음. 반면, 한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VII. 인턴 실습 소감

- 유럽에 체류한 것도 처음이지만, 그 중에서도 유럽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동쪽의 나라”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에 머물게 된 것은 행운이었다. 맑은 공기와 훼손되지 않은 자연경관, 그리고 약 270여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현재까지 아름답게 보존되고 있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문화유산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는 옛 문화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였다.
- 은행 및 우체국 업무는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기타 서비스업은 주중 오후 8시, 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 일요일은 전체 휴무제로 운영되는 서비스업의 시스템은 정말이지 불편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유럽 국가의 사람들은 대부분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일찍 귀가하는 가정적인 성향이라는 점을 알게 되자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여가시간도 지지해 줄 수 있는 높은 국민성에 오히려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다.
- ‘빨리 빨리’ 문화에 익숙해진 한국 사람들은 오스트리아의 ‘느린 행정’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곤 했다. 느린 가운데 정확한 일 처리도 중요하지만 한국인 특유의 빠른 행정처리는 정말 우수하다. 우리나라가 60년만에 이룬 한강의 기적도 이러한 빠른 일 처리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도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 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 한국에 대한 문화 홍보 및 행사지원 업무를 하면서, 오스트리아와 한국은 지리상으로는 멀지만 굉장히 가까운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풍물놀이 플래시몹을 하는 동안 홍보 책자와 대한민국 국기를 스스럼없이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으로서 자긍심도 느낄 수 있었다. 더욱 놀라웠던 점은 K-POP 무대에 참가했던 오스트리아 현지 청소년들이 한국 대중음악을 너무나 좋아하고 즐긴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아이돌처럼 칼군무 댄스를 추고 노래를 열창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나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웠고, 기회가 닿으면

또 다른 한국의 전통음악과 음식들도 널리 알리고 싶었다.

- 국제기구 회의참석 및 자료정리를 하다 보니, 정규예산(2014년도 기준) 부담률 비율을 보면 전체 예산에서 한국이 1.92%로 13위였다. 적은 순위는 아닌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수준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에 이어 2위인 일본(10.43%)의 예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을 보면서, 동아시아 국가 중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나라도 좀더 외교업무에 대한 지원금 및 기금을 늘려 외교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으로써 동시에 강력한 발언이 이루어져 북한 핵 무기와 같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을 떠안고 있는 우리나라에 좀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다.

## [붙임1]

### 핵사고 시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sup>5)</sup>

#### ○ 협약의 의의

핵사고 시 조기통보협약은 가입한 회원국에서 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IAEA와 이웃나라, 그리고 회원국가에 이른 시간 내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그리고 ‘핵사고 시 상호지원협약’은 가입회원국에 핵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원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지원요청을 받은 회원국은 사고수습을 위해 지원을 해주기로 한 협약이다.

동 협약은 핵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경을 넘나드는 방사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정보를 교환하여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고 이후, 방사능 누출이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함에 따라 체결된 협약임

#### ○ 협약의 적용범위

가입회원국 내에서 국제적인 수준의 핵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회원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1986년 9월 IAEA 총회에서 채택, 1986년 10월 발효
- 2014 9월 11일 기준 69개국 서명, 119개국 비준서 기탁(우리나라 발효일: 1990. 7. 9)

#### ○ 회원국의 의무

##### - 제2조

(a) 핵 사고 시에는 회원국은 직접 또는 IAEA를 통하여 물리적 영향을 받거나 또는 받을 수 있는 국가 및 기구에 핵사고 발생사실과 그 성질, 발생 시간 및 적절한 경우 정확한 위치를 즉시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다.

(b) 핵 사고 시에는 각 회원국들은 직접 또는 IAEA를 통하여 (a)항에 언급된 국가 및 기구에 그 국가에서의 방사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용한 관련 정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1항) 각 회원국은 직접 또는 기구를 통하여 제2조에 언급된 통보 및 정보를 발송하고 접수할 책임이 있는 주무당국 및 연락처를 기구와 다른 당사국에 알려야 한다. 그러한 당사국의 연락처 및 기구내 연락처는 계속적으로 이용가능 하여야 한다.

---

5) 1986년 9월 26일 채택되어, 1986년 10월 27일 발효되었다. 한국은 1990년 7월 9일 발효. 당사국은 66개국(그 외에 세계기상기구,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수락선언). 1986년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를 계기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총회에서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과 함께 채택되었다(이 2개의 협약을 원자력사고관련 2협약이라고 한다). 국경을 초월하여 방사능의 영향을 미치는 핵사고에 대한 관련 정보의 조기의 획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국제적인 틀을 정한다. 전문 및 17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고의 통보의무(2조), 제공정보의 내용 (5조), 협의(6조) 등을 규정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Early Notification of a Nuclear Accident]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 (제9조) 상호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주제에 관한 양자 또는 다자약정의 체결을 고려할 수 있다.

○ 기구의 의무

- 제4조

(a) 기구는 당사국, 회원국, 제1조에 명시된 물리적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기타 국가 및 관련 정부간 국제기구 (이하 "국제기구"라 함)에 제2조 (a)항에 따라 접수된 통보를 즉시 알려야 하며,

(b) 요청이 있는대로 당사국, 회원국 또는 관련 국제기구에 제2조 (b)항에 따라 접수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

(c) 기구(IAEA)는 관련 국제기구의 연락처 뿐만 아니라 국가별 주무당국 및 연락처의 최신 목록을 유지하고 그것을 당사국, 회원국 및 관련 국제기구에 제공하여야 한다.

## [붙임2]

###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

#### ○ 협약의 의의

핵사고나 방사능 유출 등 긴급사태의 경우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러한 방사능 유출로 인한 생명,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지원과 원조를 용이하게 하도록 당사국들간 및 IAEA와의 협력을 위한 국제적 골격 수립을 목적

#### ○ 협약의 적용범위

핵사고나 방사능물질에 의한 긴급사태시 사고발생 국가는 필요한 지원의 범위와 종류를 명확히 하고 지원국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타국이나 IAEA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받은 국가는 지원 여부를 즉시 결정하여 요청국가에게 원조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통고해 주어야 하는 내용들이 포함

또한, 당사국의 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의 방향과 통제, 권한 있는 국가기관, 비용의 변제, 정보의 비밀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재산과 관련된 특권면제 규칙, 청구 및 보상 등에 관한 여러 가지 행정 절차적 규정들을 포함

- 1986년 9월 IAEA 총회에서 채택, 1986년 10월 발효

- 2014 8월 7일 기준 68개국 서명, 112개국 비준서 기탁(우리나라 발효일: 1990. 7. 9)

#### ○ 회원국의 의무

(제1조 1항) 당사국은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방사능 방출결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 인명,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한 지원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들간에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이하 "기구"라 함)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2조 3항) 이러한 지원요청을 받은 각 당사국은 요청받은 지원의 제공가능성 여부, 제공할 지원의 범위 및 조건을 신속히 결정, 직접 또는 기구를 통하여 요청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b항) 요청국은 그 능력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현지 시설 및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지원 당사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대행으로 요청국 영토에 반입된 인력, 장비 및 물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 1항) 각 당사국은 직접 또는 기구를 통하여 지원요청을 접수하고 지원 제공을 수락할 권한이 있는 주무당국 및 연락처를 기구 및 다른 당사국에 공표한다. 그러한 당사국의 연락처 및 기구내 연락처는 계속적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제7조 2항)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상으로 제공될 때에는 요청국은 지원 당사자를 대행하는 요원이나 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발생한 경비 및 요청국에 의하여 직접 지불되지 아니한 지원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지원 당사자에 보상하여야 한다. 달리 합의되지 아

니하는 한, 보상은 지원당사자가 보상청구를 제시한 후 즉시 제공되어야 하며, 현지 경비 이외의 경비에 관하여는 자유로이 양도 가능하여야 한다.

(제8조1항) 요청국은 지원당사자의 요원 및 그를 대행하는 요원에 대하여 지원 기능 수행에 필요한 특권, 면책 및 편의를 부여한다.

## ○ 기구의 의무

(제2조 1항) 만일 당사국이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그러한 사고나 긴급사태가 그의 영토, 관할 또는 통제하에서 발생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하거나를 불문하고, 당사국은 직접 또는 기구를 통하여 어떤 다른 당사국 및 기구 또는 적절하다면 기타 정부간 국제기구(이하 "국제기구"라 함)로부터 그러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각 당사국은 주무당국 및 연락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변경도 신속히 기구에 통지하여야 하며, 기구는 이와 같은 정보를 당사국, 회원국 및 관련 국제기구에 정기적으로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당사국은 제1조 제3항에 따라 그리고 이 협약의 기타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기구에 다음을 요청한다.

(a) 다음에 관한 정보를 수집, 당사국 및 회원국에 배포함

(1)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이용 가능한 전문가, 장비 및 물자

(2)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의 대응에 관한 방법, 기술 및 이용 가능한 연구결과

(b) 다음과 같은 또는 기타 적절한 사항에 관하여 요청을 받은 경우 당사국 또는 회원국을 지원함.

(1) 핵사고 및 방사능 긴급사태시 비상계획 및 적절한 입법 준비

(2) 핵사고 및 방사능 긴급사태를 처리할 요원에 대한 적절한 훈련계획 개발

(3)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 및 관련정보에 대한 요청의 전달

(4) 적절한 방사능 감시계획, 절차 및 기준의 개발

(5) 적절한 방사능 감시체제 수립의 타당성 조사

(c)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을 요청하는 당사국 또는 회원국에게 사고 또는 긴급사태의 최초 평가 실시 목적으로 할당된 적절한 재원을 이용하게 함.

(d)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당사국 및 회원국에 중재를 제공함.

(e) 관련정보 및 자료를 입수하고 교환할 목적으로 관련 국제기구와 연락관계를 수립, 유지하고 당사국, 회원국 및 위에 언급한 기구에 그러한 조직의 목록을 이용가능하도록 함.

## [붙임3]

###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 ○ 협약의 의의

- 가. 국가의 조치와 적절한 경우 안전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포함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통하여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원자력 안전을 달성·유지한다.
- 나. 원자력시설의 잠재적인 방사선 장해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책을 도입, 운영함으로써 방사선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개인, 사회 그리고 주변 환경을 보호한다.
- 다. 방사선의 영향을 일으키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그 영향을 완화한다.

#### ○ 협약의 적용범위

이 협약은 원자력 시설의 안전에 적용한다.

#### ○ 회원국의 의무

##### (제4조) 이행조치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국내법의 테두리내에서 입법적, 규제적 그리고 행정적인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제5조) 보고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각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제20조에 언급된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검토를 위하여 제출한다.

##### (제6조) 현존 원자력 시설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하는 시점에서 현존하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이 가능한 한 빨리 검토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 협약상 필요한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개선조치가 긴급히 취해지도록 보장한다. 만약 이러한 안전성 향상이 여의치 못하다면 그 원자력 시설의 운전을 중지하기 위한 계획이 가능한 한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운전중지의 시기는 전반적으로 에너지 상황과 가능한 대안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 ○ 기구의 의무

##### (제10조) 안전우선

각 계약당사자는 원자력 시설에 직접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조직이 원자력 안전에 정당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제11조) 채용 및 인력

1. 각 계약당사자는 시설의 수명기간동안 각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채용이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각 계약당사자는 원자력 시설의 수명기간동안 각 원자력시설 자체의 또는 원자력시설을 위한 모든 안전관련 활동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 훈련 및 재교육을 받은 충분한 수의 적격인 요원이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제12조) 인적요소

각 계약당사자는 원자력 시설의 수명기간동안 작업종사자의 업무능력과 그 한계가 고려되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제13조) 품질보증

각 계약당사자는 원자력 시설의 수명기간동안 원자력 안전에 중요한 구체적인 모든 활동요건이 충족되고 있다는 신뢰를 주기 위하여 품질보증 프로그램이 수립되어 시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제14조) 안전평가 및 검증

각 계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원자력 시설의 건설 및 시운전을 하기 전 그리고 동 시설의 수명기간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성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적절히 문서화 되어야 하며, 운전경험과 중요한 최신 안전정보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야 하며, 규제기관의 감독하에 검토되어야 한다.
- 나. 원자력 시설의 물리적 상태와 운전이 지속적으로 그 설계, 적용가능한 국가의 안전요건 및 안전조건과 운전제한조건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해석, 감시, 시험 및 검사에 의한 검증이 수행되어야 한다.

#### (제15조) 방사선방호

각 계약당사자는 모든 운전상태에서 원자력 시설로 인해 작업종사자나 공중에 대한 방사선 피폭을 합리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한 낮게 유지하여 어떠한 개인도 규정된 국가선량제한치를 초과하는 방사선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제16조) 비상대책

1. 각 계약당사자는 원자력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상시에 수행하여야 할 활동을 포함하는 원자력 시설의 부지내외에 대한 비상계획이 수립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계획은 새로운 원자력 시설에 대하여는 규제기관이 합의한 저출력 준위 이상에서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수립·시험되어야 한다.

2. 각 계약당사자는 원자력 시설의 방사선 비상사고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기나라 주민은 물론 원자력시설의 주변에 위치한 국가의 관계당국에 방사선 비상계획 및 대응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자기나라 영토에 원자력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계약당사자는 주변의 원자력 시설에서의 방사선 비상사고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러한 비상시에 수행되어야 할 활동을 포함하는 자신의 영토에서의 비상계획을 준비하고 시험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붙임4]

### 원자력 손해배상법

#### ○ 의의

(제1조)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적용범위

(제2조의2)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역(영해를 포함한다)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원자력 사고로 인한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입은 원자력손해의 배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 사업자의 의무

①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국가 간의 무력 충돌, 적대 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 간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에는 그 핵연료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 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선박에 설치한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해서는 「상법」 제769조, 제770조, 제773조, 제875조 및 제88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배상책임 한도)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3억 계산단위 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 자신의 고의로 발생하였

거나 그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계산단위"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特別引出權)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구상권) ① 제3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원자력손해를 제3조에 따라 배상한 원자력사업자는 그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원자로의 운전등에 제공될 자재를 공급하거나 역무(노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공급 또는 제공을 한 자나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구상권에 관하여 특약이 있을 때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제5조(손해배상조치의무)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손해배상조치"라 한다)를 하기 전에는 원자로의 운전등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조치는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 및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의 체결 또는 공탁으로 한다.

제6조(배상조치액)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의 금액 및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의 금액 또는 공탁금액은 제3조의2에 따른 배상책임한도액의 범위에서 원자력이 용시설의 종류, 취급하는 핵연료물질의 성질 및 원자력사고로 발생할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배상조치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장래의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금액이 배상조치액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손해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원자력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배상조치액을 충족하도록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더라도 제5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 ① 제5조제2항에서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이란 제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겼을 때에 일정한 사유로 인한 원자력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보험자(「보험업법」에 따라 책임보험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한다)가 보전(補填)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조건에 관하여 원자력안

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IAEA 국제원자력기구 (<https://www.iaea.org>)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대사관 겸 주 빈국제기구대표부 (<http://aut.mofa.go.kr/korean/eu/aut/main/index.jsp>)

핵군축 및 비확산 비엔나 센터 (<http://vcdnp.org>)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http://www.law.go.kr))